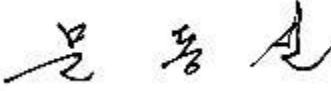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통리장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6년 2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08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통리장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군산시 통리 장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통리 장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군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2호 서식
까지를 별지 2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
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4부터 별지 6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 군산시 주
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9호 서식을 각각 별지 7부터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5조(「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9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11와 같이 한다.

제7조(「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 12부터 별지 19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 20부터 별지 26까지와 같이 한다.

제9조(「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 27부터 별지 32까지와 같이 한다.

제10조(「군산시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33부터 별지 35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 36, 별지 37과 같이 한다.

제12조(「군산시 식품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식품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38부터 별지 39까지와 같이 한다.

제13조(「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40부터 별지 42까지와 같이 한다.

제14조(「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43부터 별지 44까지와 같이 한다.

제15조(「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45부터 별지 46까지와 같이 한다.

제16조(「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47과 같이 한다.

제17조(「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48부터 별지 51까지와 같이 한다.

제18조(「군산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52부터 별지 53까지와 같이 한다.

제19조(「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54와 같이 한다.

제20조(「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55와 같이 한다.

제21조(「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식을 별지 56부터 별지 58까지와 같이 한다.

제22조(「군산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 59부터 별지 63까지와 같이 한다.

제23조(「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64와 같이 한다.

제24조(「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

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65와 같이 한다.

제25조(「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66과 같이 한다.

제26조(「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및 제18호 서식을 별지 67부터 별지 80까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2월 29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번		성별	
보호자	주소				
	성명		관계	학생의()	
	생년월일		통이장경력	년 월	
	종합토지세액		재산세액		

본인은 학년도 통·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 추천서 1통
2. 재산세 과세 증명서(미과세 증명) 부·모 각1부

년 월 일

신청자 (인)

보호자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5]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6.12.05>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민원명				접수 및 처리일자	접수: 처리:
				민원처리 담당부서	
민원인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출원요지					
심의 결정사항					
심의 결과 과	심의결과접수일자:				
	심의위원			심의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			위원	

○ 회의록: 별첨

[별지 6]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민원 1회 방문 처리내용 및 의견

민원사항				
민원명			민원사항	
민원인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접수일자			처리기간	까지
처리일자				
출원요지				
처리내용				
담당부서 의견				

- 관련법규 :
- 참고사항 :
- 첨부 : 1. 민원 서류 사본 1부.
2. 첨부서류 1부.

[별지 7]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추천(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세)	
주 소			학 력	
전화번호		직 업		
주요경력				
추천사유 (신청사유)				

위의 사람을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 (인)

군산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9]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3.10.01>

군산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사업장 (예정)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 (-)
개업 (예정)일		업종	
종업원수 (예상)	명	(정규직 :)	(명)
		(아르바이트 :)	(명)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 중복지원 여부			
융자금 신청액	백만원	대출희망 금융기관	은행 지점
융자금의 용도	<input type="checkbox"/> 창업 <input type="checkbox"/> 점포이전 <input type="checkbox"/> 인테리어 개선	<input type="checkbox"/> 업종전환 <input type="checkbox"/> 운전자금 확보 <input type="checkbox"/> 기타()	
<p>상기와 같이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군산시장 귀하</p>			
첨 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3. 소상공인 증빙서류(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p>※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10]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3.10.01>

군산시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내역

(단위 : %, 원)

연 번	업 체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소 재 지	대 출 액 (대 출 잔 액)	대 출 일 자	대 출 금 리	이 자 상 환 일	이 자 상 환 액	이 차 보 전 율	이차보전금액 (연체제외)	비고 (전화번호등)
계												

군산시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금융기관장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11]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근무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학 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학교명		학년.반	
	근로자와의 관 계			
<p>「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p> <p>군산시장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근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추천) 1부. 2. 군산시 (사용자·노동조합) 장학생 추천서 1부. 3. 근로자 급여 명세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12]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9조제3항관련) <개정2007.01.02>

본사·연구소·생산자서비스업 이전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이전부문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생산자서비스업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백만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백만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건설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율(%)
분양계약체결 및 설립신고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업종 (분류번호)	()	
이전기업투자금액 (a+b)	백만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명	
건물구입비/임대료 (a)	백만원		시설장비설치비 (b)	백만원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제4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임대료, 시설장비 구입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5. 이전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6.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1부
7. 건물 및 시설장비 사진 1부
8. 이전 전 소재지의 증명원(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원) 1부
9. 기업 폐쇄 확인서 1부

[별지 13]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제9조제5항관련)

공장시설 이전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팩스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농공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이전부문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전부문의 이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백만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백만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율(%)			
분양계약체결 및설립신고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업종 (분류번호)		()		
이전기업투자금액 (a+b+c)	백만원		상시고용 (1+2)	명	신규채용(1)	명	이전인원(2)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 (a)	백만원	시설장비구입비 (b)	백만원	기반시설설치비 (c)	백만원		
보조금 신청액 (건축+장비+시설비) ※ 토지매입비 제외	백만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제4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임대료, 시설장비 구입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이전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6. 이전후 공장등록증명원(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포함) 1부 7. 건물 및 시설장비 사진 1부 8. 이전전 소재지의 증명원(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원) 1부 9. 기업 폐쇄 확인서 1부							

[별지 16]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2007.07.30>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제7조제2항관련)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화	
			F A X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창업 <input type="checkbox"/> 기존공장이전 <input type="checkbox"/> 공장증설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			
공장설립일		업종 (분류번호)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인원	명	
교육훈련기관		소요금액	백만원	
보조금신청액	백만원 (USD 상당)			
<p>「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신 청 인 : (인)</p> <p> 군 산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17]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서식] <신설 2007.07.30>

시내공장 신설 투자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의2관련)

지 원 대 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입 주 유 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 대		
입 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농공단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 주 업 종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부품 <input type="checkbox"/> 기계및장비 <input type="checkbox"/> 첨단업종 <input type="checkbox"/> 식품관련제조업				
기존공장소재지		번지	신규공장소재지 (산업·농공단지명)		번지 ()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m ²)		천원
분양(매입)면적(m ²) (임대면적) <small>※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small>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율(%)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
신설공장투자금액 (a+b+c)		천원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 (a)		천원	시설장비 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 설치비(c)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제4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시내공장 신설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18]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 14호서식] <신설 2007.07.30>

시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신청서(제10조의 2 관련)

지 원 대 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입 주 유 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 대		
입 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농공단지		<input type="checkbox"/> 기 타
입 주 업 종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부품 <input type="checkbox"/> 기계및장비 <input type="checkbox"/> 첨단업종 <input type="checkbox"/> 식품관련제조업				
기존공장소재지		번지	신규공장소재지 (산업·농공단지명)		번지 ()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천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small>※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small>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율(%)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		
신설공장투자금액 (a+b+c)		천원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건축비(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 (a)		천원	시설장비 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 설치비(c)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제4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시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19]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업종전환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공장소재지					
	지원받은 내용					
변경 전	업종	공장부지면적 (m ²)	제조시설면적 (m ²)	부대시설면적 (m ²)	기타	
변경 후	업종	공장부지면적 (m ²)	제조시설면적 (m ²)	부대시설면적 (m ²)	기타	
변경사유						
<p>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업종 전환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군산시장 귀하</p>						

[별지 20]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1. 사 용 시 설 명 :

2.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3. 사 용 목 적 :

4. 참 석 예 정 인 원 :

5.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

6. 기 타 사 항 :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재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일) 생년월일 :
직 업 (단체명) : 전 화 번 호 :

군 산 시 장

[별지 22]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수 강 신 청 서

희망과목	제1지망 : 과,		제2지망 : 과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전화	
	종 교			혈액형			최종학교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 령	직 업		비 고
수 강 동 기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수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23]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사용료

사용시설명	사용료	산출기초	비고

6. 허가조건 :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24]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변경허가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2. 변경허가내역 :

○ 변경 전 :

○ 변경 후 :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별지 25]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사용료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단체명)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사용료 :

6. 감면사유 :

7. 기 타 :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26]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사 용 료 반 환 신 청 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단체명) :

2. 사용시설 :

3. 사용허가기간 :

4. 반환금액 :

5. 반환신청사유 :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종합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신 청 인

전화번호

군 산 시 장 (인)

[별지 27]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신청 및 추천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주거형태	자가, 친척, 전세, 월세, 하숙	동거여부	가족, 동료, 친척, 기타
가족관계	부, 모, 형제(남: 명, 여: 명)		
소득 사업장	사업장명	()회사	직종 사무직, 생산직
	종업원수		기숙사유(명수용), 무
	입사일		월평균임금 원
	소재지	(전화 :)	

2. 추천인

○ 우리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희망자로 추천함.
 회사명 : 대표자 : (인)

3.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에 필요한 증명1부(해당자에 한함)
-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
 소 속 :
 성 명 :

20 . . .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별지 28]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입 주 결 정 통 지 서

1. 입주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사 업 장	(과)	회사	부
입주 동·수	방	동	호
계약체결기간	일	20 년 월 일~	월

귀하는 우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지정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된 기일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시 준비사항

-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장 (인)

[별지 29]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6.10.11>

임대기간연장신청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입주동 호 수		동 호 방	
임대기간	20 . . . ~ 20 . . .			
연장희망 기 간	20 . . . ~ 20 . . . (월)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군 산 시 장 귀하</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20px;">※ 본 신청서 임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p>				

[별지 30]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96.10.11>

임 대 차 계 약 해 지 신 청 서

입 주 자 인 적 사 항	입 주 동 호	동 호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입주 년월일	년 월 일
해 지 사 유				

위와 같이 아파트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년 월 일까지 퇴거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입주자 : (인)

군 산 시 장

※ 본 신청서는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31]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입 주 자 관 리 카 드						사 진
1. 입주자 인적사항						
성 명	(한문)			생년월일		
주 소				주민 등록지		
학 력	취 미		취 미			
(최종학력)			특 기			
근 무 처	회사명 :	근무부서 :		전화번호 :		
근 무 년 수	년 월		월급여액			
2. 가족사항						
성 명	생년월일	본인과의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본인과의관계	
3. 아파트 이용						
동 수	입 주		퇴 거		비 고	
	년 월 일	사 유	년 월 일	사 유		
4. 사용료 납부						
○ 임대보증금						
금 액	입 주			퇴 거		비 고
	년 월 일	기 간	은 행	년 월 일	환불수령자	
○ 월 임대료						
구 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
납부확인						분
구 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
납부확인						분
구 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
납부확인						분
구 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
납부확인						분

[별지 32]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각 서

본인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아파트 관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이를 위반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지 않을 것.
2. 관리소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지 않을 것.
3. 시설내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하지 않을 것.
5. 사용료, 공공요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지 않을 것.
6. 아파트의 관리운영 규정이나 시설관리 규칙을 위반하지 않을 것.
7. 다른 입주자와 공동생활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일이 없을 것.
8. 미혼여성 근로자의 고용증가 등으로 입주 희망자가 있어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한다.

200 . . .

회사명 : 고무인(상호, 주소, 대표)

대표자 : (인)

서약자

생년월일 :

성명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33]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하역료, 해상운임, 손실보전금)신청서

신 청 인	① 상 호(선박명)			
	② 대표자(성명)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 :)		
⑤ 항로명 및 기항지				
⑥ 사업 면허 종류				
⑦ 면 허 번 호			⑧ 허가일자	
⑨ 신 청 금 액		금 원		
<p>「 전라북도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한 조례」 제6조 및 「 군산시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군 산 시 장 귀하</p>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하역료, 해상운임, 손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34]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물류기업 물류비용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또 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전 화 F A X	
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전	이 전 후		
본사 소재지				
본사근무인원				
사 옥 가 액	원	원		
소 유 형 태	<input type="checkbox"/> 임 차 <input type="checkbox"/> 취 득	<input type="checkbox"/> 임 차 <input type="checkbox"/> 취 득		
보조금 신청액	금	원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북도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한 조례」 제6조 및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화물유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비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군 산 시 장 귀하</p>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p>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p> <p>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p> <p>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p>				

[별지 35]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또 는 명 칭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금액	금 원	전 화 F A X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비 산출내역
4.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사업추진일정
6. 사업기대효과 (별지 작성 가능)

「전라북도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한 조례」 제6조 및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37]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	①성 명		③생년월일	
	②주 소			
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기타)				
⑤보상대상자 (주소·성명)				
⑥보 상 금		금 _____ 원		
<p>「군산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군 산 시 장 (인)</p>				

[별지 38]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09.15>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소(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	⑦ 영업장총면적	m ²	⑧ 자 산 총 액	천원	
대상업종	⑨ 업 종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업 <input type="checkbox"/> 휴게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제과점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 <input type="checkbox"/> 모범음식점 <input type="checkbox"/> 향토전통음식점 <input type="checkbox"/> 위탁급식영업 <input type="checkbox"/> 단란주점 <input type="checkbox"/> 유흥주점			
자금 융자 신청 내역	⑩ 실소요금액		⑪ 융자신청금액	⑫ 삭제	
위와 같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시 확 인		20 년 월 일		지정은행확인	
확 인 자		신청인 (인)		은행명	
직	성 명			대 출	<input type="checkbox"/> 가 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인)			확인자	(인)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39]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09.15>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⑤ 영업장총면적	m ² (평)		
	⑥ 계획 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	⑦ 실소요금액	⑧ 융자신청금액	⑨ 삭제	⑩ 비 고
<p>위와 같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 신청인 (인)</p> <p>군산시장 귀하</p>				

[별지 40]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군산 맛집 지정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형태		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종류		주 취급음식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 맛집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41]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군 산 맛 집 지 정 증

업 소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형태		전화번호	
업소소재지			
음식의 종류			
지정사항 변경내역	<input type="radio"/> ○ ○ ○ ○ ○ 재심사 <input type="radio"/> ○ 2011. 재심사		

위 업소를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군산 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42]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군산 맛집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형태		전화번호	
업소소재지			
음식의 종류			
재교부 사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군산 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43]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와 관 계				연락처		집전화: 핸드폰:	
가 족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 여부	건강 상태	학 력	직 업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원						
위와 같이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서명)								
군 산 시 장 귀하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별지 44]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장
(읍·면·동)

연번	지원대상자			보험료 (단위: 원)	지원 구분	지 급 개시일	지 급 중지일	비고
	주 소	성명	생년월일					

[별지 45]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안 제3조 관련)

제 호 사체 (□매장, □화장, □봉안) 감면 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매.화장.봉안 장소		사망년월일	
	감면사유		감면금액	금 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 계	
<p>「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제16조, 제21조, 제27조2항에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 신 청 인 인</p> <p>군산시장 귀하</p>				

제 호 사체 (□매장, □화장, □봉안) 감면 신고필증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매.화장.봉안 장소		사망년월일	
	감면사유		감면금액	금 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 계	
<p>「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제16조, 제21조, 제27조2항에의거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신청 하였기에 신고필증을 교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 군 산 시 장 (인)</p>				

[별지 46]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안 제4조 관련)

제 호		추모관(봉안)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봉안연월일			
	추모관소재지			봉안설치자(관리자)		()	
봉안기간연장회수 및 연장기간		1회	~	2회	~	3회	~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p>「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납골(봉안)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p>							
<p>※ 구비서류 신분증 및 납골증명서</p>							

제 호		추모관(봉안)기간 연장 증명서			
사망자	성 명			봉안설치연월일	
	봉 안 연장기간	-		봉안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p>「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봉안 연장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군 산 시 장 (인)</p>					

[별지 47]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1.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50]

군산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과징금감경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 처분	감경사유			
	감경내용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51]

군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과징금감경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	인 적 사 항			업소명	적발 일시	감경 대상	감 경 처분일	감경액 (비율)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별지 52]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자립기금지원대상자추천서

지원종목 : () 지원금							
신청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			
	주소	한문:		학력	()학교		
지원사업	훈련기관 공과			학교명 (사업명)			
	지원기관	20 . . . 부터 20 . . . 까지		지원기금 신청금액			
가족사항							
성명	관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직업	월평균소득	비고
주거사항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가구원	
재산상황	주택	천원,	전답	천원(전	평, 답	평)	월평균소득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립기금지원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추천자 읍·면·동장 인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53]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자립지원기금교부신청서

기금자원 종 목	분기	지원대상자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교 명 (훈련기관)	학년 공과	기금지원 신청액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20 . . .

추천자 읍·면·동장 인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54]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사 진
신청인	(1)성명	(한자)		
	(2)생년월일		(5)전화	
	(3)주소			
(6)신청구분	교향악단	상임·비상임	합창단	상임·비상임
(7)직책				
(8)파트				
<p>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동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2 0 년 월 일</p> <p>위본인 성명 (인)</p> <p>군 산 시 시 립 예 술 단 장 귀 하</p>				

[별지 55]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 신청서

성 명 (단 체 명)		
사 업 명		
공모사업유형 (해당난에 v표)	① 문화·예술 분야 <input type="checkbox"/> ② 생활공간 가꾸기 분야 <input type="checkbox"/> ③ 생태문화네트워크 분야 <input type="checkbox"/> ④ 편의시설 분야 <input type="checkbox"/> ⑤ 가로경관 가꾸기 분야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분야 <input type="checkbox"/>	
사 업 비		천원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 사업장소 : ○ 주요내용 : - -
연락처	주 소	□□□-□□□
	전 화	
	F A X	
	e-mail	

위와 같이 ○○읍면동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세부사업 설명서 1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사업세부설명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기간 : ~
- 사업장소 :
- 사업비 : 천원

2. 사업목적

※사업대상계층·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

-
-

3. 사업추진방법

-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주요내용	세부항목

5. 기대효과

-
-

사업별 신청자 명단

(사업명 : _____)

(음면동명)

연번	사업명	참여자인적사항			비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	
					대표자

[별지 56]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총괄조서

(단위:m²)

권리번호	종전토지				환지예정지				확정							징수금 (원)	교부금 (원)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블럭	롯트	권면적 과도	환지면적 부족	동명	지번	지목	권면적	환지면적	과도면적	부족면적			평정 단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57]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징 수 조 서

(단위:m²)

권리번호	종전토지				확 정									청산금수불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블럭동명	롯지번	지목	권리면적	환지면적	과도면적	부족면적	평정단가	징수금(원)	교부금(원)	가산금	청산일자	대조	확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58]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교 부 조 서

(단위:m²)

권리번호	종전토지				확 정									청산금수불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블럭동명	롯지번	지목	권리면적	환지면적	과도면적	부족면적	평정단가	징수금(원)	교부금(원)	가산금	청산일자	대조	확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59] 군산시건축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축심의신청서					
연 번		상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건축위치: 시 동 가 번지					
건축주	주소				
	생년월일				성명
용도지역 및 지구		지 역		지 구	
건축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건폐율		주용도
	구조		용적용		기타용도
	건축종별				
	최고높이		주거용건축물인 경우 등 세대		
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전화		성명
설비	기계	주소	기술사등록번호 (기술전문분야)		
		사무소명	전화		성명
설계	전기	주소	기술사등록번호 (기술전문분야)		
		사무소명	전화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부 : 1. 현장조사 보고서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계획서 1부 4. 에너지절약계획서 부(대상건축물에 한함) 5. 도시경관심의계획서 부(대상건축물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2 0 신청인 주소 : 성명 :</p> <p>군 산 시 장 귀하</p>					

[별지 60] 군산시건축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 하 실 설 치 불 가 의 견 서									
건축위치									
건축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용도 지역 지구									
건축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건축종 별		건폐율			건폐율		
	주소	용적율				건폐율			
설계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접 시설물현황	위치	전	후	좌	우				
	이격거리 및 종류								
지질보고서 작성자	사무소명				전문분야				
	성명				등록번호				
지질조사내용									
종합의견									
2 0 . . .									
첨부 : 지질조사 보고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사무소명 : 확인자 : </div>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61] 군산시건축조례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축상응모신청서					
연 번					
건축위치	시 동 가 번지				
건축주	주소				
	생년월일		성명		
용도지역 및 지구	지 역			지 구	
건축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건폐율		주용도	
	구조	용적율		기타용도	
	건축종별				
	최고높이	주거용건축물인 경우 동 세대			
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시공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p>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 부 : 1. 설계도서(배치, 평면, 입면, 주단면도) 2. 완공사진 1점 3. 투시도 1점 4. 설계설명서 5. 예술장식품(설치한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2 0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p> <p>군 산 시 장 귀하</p>					

[별지 62] 군산시건축조례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온돌시공자격자등록 신고서 변경신고서				사 진
신 고 인	1.성명		2. 생년월일	
	3.상 호			
	4.자격종별		5.자격증번호	처리기간:
	6. 주소			7.전화번호
8. 신고번호				
<p>건축법 제56조 및 건축조례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돌시공자격자임을 신고 (변경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군 산 시 장 귀하</p>				
<p>구 비 서 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돌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통 2. 국가기술자격 미취득자는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회에서 이수한 교육이수증 사본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p>※ 8. (신고번호)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p>				

[별지 63] 군산시건축조례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온돌시공자신고필증

- (1) 온돌시공자 신고번호
- (2) 성 명 (3) 생년월일
- (4) 주 소
- (5) 자격증 종목 및 번호
(양성교육이수자는 이수증번호)

건축법 제56조 및 건축조례 제75조에 의거 온돌시공자 등록을 마쳤음으로 본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 0 . . .

군 산 시 장

[별지 64]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융자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

귀사에서 년 월 일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받은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상환기한이 아래와 같이 도래되나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융자시 약정된 기한내에 상환이 불가능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상환기한연장요청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대출일	상 환 기 일		상 환 금 액		
		당 초	연장요청일	대부금액	기상환액	상환잔액

붙 임 : 상환기한 연장신청사유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통·반) 번지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연대보증인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통·반) 번지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연대보증인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통·반) 번지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하

인감대조필	확인자, 직	성 명	(인)
-------	--------	-----	-----

[별지 65]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단체명		참여농가수	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m ²		생산계획량	
	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

분야	항목	배점	평점
가. 일반여건	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30	
나. 생산여건	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30	
다. 품질관리여건	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30	
라. 우수조직인센티브	① 우수조직인센티브	10	
계	10개항목	100점	점
주거래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명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6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정수
 폐전 신고서
 개선

급 수 전

수 전 번 호		업 종		구 경	mm
주 소(위치)	군산시				
수용가 성명			수용가번호		
정 수	수도 사용 개시 일자				
폐 전	수도 정수,폐전 일자				
정수, 폐전, 개선 사 유					
개 전	정수년월일				
	체 납 액	원	개선수수료	원	

위 급수전에 대하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약도 : 뒷면]

200 년 월 일

- 주 소 : 군산시
- 신고인 성명 : (인) 관 계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군산시장 귀하

처 리 사 항			
계 량 기 정수,폐전, 개선 조치사항	개선,정수,폐전일자		
	담 당 자		
	계량기 번 호		지침 :
수 납 부 정 리		대장정리	검침부정리
전 산 담 당	담 당 자		

[별지 69]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3.10.01>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						
<p>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군산시장 귀하</p>						
<p>첨 부 : 1. 자격증사본 1부. 2. 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p>						

[별지 70]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3.10.0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 태			전화번 호	
신 고 내 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 출 량	생활하수	m ³ /일	사업장 폐수	m ³ /일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연 건 평	m ²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모타규격				설치대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수능력	m ³ /H
관리자 성명				기 타		
상 수 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 사용료	특 기 사 항		
<p>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군산시장 귀하</p>						
<p>첨부서류 : 입증서류</p>						

[별지 71]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3.10.01>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업 태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수동펌프우물유수인수)	
	모타규격				설치개소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m/m
	관 구 경	m/m			양수능력	m ³ /H
	관리자 성명				기 타	
	용 도					
	사용기간	일 간	m ³		m ³	
	사 용 량				월 간	
	비 고					
<p>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군산시장 귀하</p>						
<p>첨 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p>						

[별지 72]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3.10.01>

사용량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업 태			대표자 성명			
감 수 량	제 품 명	단 위	월간 생산량	물함유량(m ³) 비 율(%)	물 함 유 량 (m ³)	기타 감수량 (m ³)	
하 수 도 사 용 량	용 수 총 량(m ³)	감 수 량(m ³)	하 수 배 출 량(m ³)		사 용 기 간		
					. . . ~ . . . (일간)		
<p>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군산시장 귀하</p>							
<p>첨 부 : 1. 입증서류 (생산실적, 수분함유량 시험성적서)</p> <p style="padding-left: 40px;">2. 기 타</p>							

[별지 73]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3.10.01>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상호 또는 건 물 명	
	업 태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양 태 별	구 분	업 태	양 수 시 설	사 용 전 력	기 타	
	변경일자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p>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군산시장 귀하</p>						
<p>첨 부 : 입증서류</p>						

[별지 76]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계측기 점검사항 (의뢰,청구)서				처리기간	
				20일	
하수번호		정리번호			
주소		상호			
업태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점검시험 의뢰(청구)일자	2 0 . . .				
가물번호		의뢰담시시간 계지침량			
시험의뢰사유					
<p>군산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시험 의뢰(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 0 . . . 신청인 주소 :</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생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귀 하</p>					
첨부: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 수납 영수증					

[별지 77]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3.10.01>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자	하 수 번 호				정 리 번 호		
	관리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상 호 또 는 건 물 명		
	대표자성명		업 태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감 면 기 간						
	감 면 사 유						
<p>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군산시장 귀하</p>							
첨 부 : 입증서류 1부							

[별지 78]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2001.07.31>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의성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과 오 납 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액	과 오 납 월 일	환 불 이 자		
						일 시	금 액	
	과 오 납 합 계 액				충당후 잔액 (환부액)			
충 당 금 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충 당 금 액			충당후의 미 납 액				
<p>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군 산 시 장 (인)</p>								
<p>첨 부 : 1.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p> <p>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79]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					처리가한 즉 시
수신	군 산 시 장				
권리자의성명			생년월일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불이자	청구금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
하 수 도 사 용 료 과 오 납 금 환 불 금 영 수 증

수신	군 산 시 장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불이자	영수금액

[별지 80]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2001.07.31>

- 앞면 -

번호 _____		사 진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p>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군 산 시 장</p>		

용지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 뒷면 -

- ### 자 격 증 명 사 항

 1. 하수도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등
 2. 하수도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명령
 3. 하수도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4. 하수도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강제징수
 5. 하수도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양벌규정
 6.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국세징수법 제26조 준용) 수색
 7. 지방세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
 8.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제19조,제22조의규정에의한 사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통 선*



2016년 2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09호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규칙”을 “이 규칙”으로,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을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산시”를 “「군산시」로, “조례(이하”조례””를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매월말일 또는 6월30일과 12월31일”을 “매월 말일 또는 6월 30일
과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산시장(이하”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으로, “지방재정
법 시행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이 천

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용자금의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동의를 거쳐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재난 등 이에 준하는 경우

2. 채무자 등이 사망한 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③ 채무자 등이 용자금의 상환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규칙은 「 <u>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u>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 「 <u>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 ----- -----.
제2조(지원신청) ① 이 규칙은 <u>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조(지원신청) ① ----- 「 <u>군산시 ----- 조례</u> 」(이하 "조례"----- ----- -----.
제3조(융자금상환) 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 매월 또는 반기로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u>매월말일 또는 6월30일과 12월31일</u> 로 한다. ② (생략)	제3조(융자금상환) ① ----- ----- ----- ----- ----- - <u>매월 말일 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u> -----.
제4조(체납자 조치) ① <u>군산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u>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u>	제4조(체납자 조치) ① <u>군산시장</u> (이하 "시장"----- ----- ----- 「 <u>지방재정법 시행령</u> 」 ----- -----

정에 의거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독촉장)을 통지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거 해당 채권과 이에 관한 이자, 연체이자를 군산시지역사회복지협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결손, 면제)처리할 수 있다.

② 체납자 대신 융자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보증인에게 상환 부담을 환화하여 융자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이자 및 연체이자를 군산시지역사회복지협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경우 군산시지역사회복지협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동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재난 등 이에 준하는 경우
2. 채무자 등이 사망한 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③ 채무자 등이 융자금의 상환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

한다.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하여 시장에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동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이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 활 기 금 용 자 신 청 서

1. 주 소 : 군산시 읍·면 로 (동,)
2.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집) (핸 드 폰)
3. 용자신청금액 :
4. 상환방법 및 기간 : 반기별, 거치 년균등상환(연 % 연체시 %)
5. 용자신청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장 위 치 :
 다. 사업 실시 기간 :
 라. 재 원 계 획 :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용 자	자부담	자부담방법	비 고

※ 사업비 산출 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귀시가 정하는 제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자금 용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추 천 인

읍면동장 : (인)

군 산 시 장 귀하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용자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자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상환 기간이 경과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과 아래의 보증인이 채무 이행할 것을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전화번호 :

보증인 지방세액 확인

재산세 (주택, 건축물)	원	확 인 자	직 :
재산세 (토지)	원	자	성명 :

보증인 인감 확인

보증인 인 감		확 인 자	
------------	--	-------------	--

군 산 시 장 귀하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3호서식】

자 활 기 금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용자일 :						
용자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명					만 기 일	. . .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상 환 내 역										
회 수	상 환 일 자	상 환 금			상환 잔액	납부 일자	연체이자(년 %)			비 고
		원금	이자	계			기간	일수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4호 서식]

자활기금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감 면 대 상 용 자 금	구 분		용 자 일 시	
	용자원금		연 체 이 자	
감면신청금액				
감면신청사유				
관계증빙서류				
<p>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p>군산시장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군산시 양성평등기금 운용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통 선*



2016년 2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610호

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군산시여성발전기금”을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군산시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산시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을 “군산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으로, “(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을 “(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조에서”를 “이 조에서”로 한다.

제9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군산시여성발전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군산시 ----- 조례</u> 」에 따라 <u>군산시양성평등기금</u> -----.
제2조(지원대상) <u>군산시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나 법인으로 한다.</u>	제2조(지원대상) <u>군산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u> ----- -----(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 -----.
1. <u>군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u>	1.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하 <u>이조에서</u> "기금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 <u>이 조에서</u> ----- ----- -----.
1. ~ 4. (생략) ②·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제9조(준용) -----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에 관하여는 「군산시보조금관
 리조례」 및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군산시 공고 제2016-166호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예고

1. 폐지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와 관련,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자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설치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에 한하여 우선 허가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규정된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선 설치 허가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폐지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전화 454-3172, 팩스 454-313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전화 454-3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안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 2003.12.08 규칙 제31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 기능) 본위원회의 위원은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 공정하게 심의하고 군산시와 계약할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은 군산시소속공무원, 군산시의회의원, 군산시에 소재하는 장애인복지관련법인(사단·재단 장애인복지관련 법인의 지회 또는 분회를 포함하고, 기타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③본위원회에 위원장1인을 두되 군산시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위원회 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조 (심의 및 선정방식) ①계약대상자의 선정방식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되, 합의, 거수, 투표방식을 시행할수 있다

②심의결과 동등자격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전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군산시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2007.01.30>

②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개정 2015.08.03>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3.12.08 규칙 제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6-192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 ~ 제4항 개정(2015.05.18. 공포, 11.19. 시행)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표준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 우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단체협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시정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제8조 신설)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신설)
-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제10조 신설)

-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적용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 제2항 제2호)
- 후생복지시설에 보육시설 추가(안 제6조)
-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수혜범위 · 대상자 확대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1호, 제2호, 제9호)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띄어쓰기 수정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1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총무과(공무원노조계)
- 전 화 : 063)454-2263, FAX : 454-2229,

○ 전자우편 : skm1978@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공무원노조계
(전화 063-454-22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국외에 2년 이상 파견중인 공무원

제3조제3항 중 “근무중인”을 “근무 중인”으로 한다.

제6조 중 “직원편의 시설”을 “직원편의시설, 보육시설”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우수·퇴직 공무원”을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제9조제2호 중 “후생복지 시설”을 “후생복지시설”로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를 제11조부터 제17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군산시 소속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산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산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산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p> <p>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시보임용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u></p> <p>3. <u>국외에 2년이상 파견중인 공무원</u></p> <p>4. (생략)</p> <p>③ 시장은 군산시에 <u>근무중인</u>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2. <u>국외에 2년 이상 파견중인 공무원</u></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③ ----- <u>근무 중인</u> ----- -----.</p>
<p>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u>직원편의 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u>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p>	<p>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 <u>직원편의시설, 보육시설</u>----- ----- ----- -.</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p>

1. 우수·퇴직 공무원에 대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신 설>

2.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신 설>

<신 설>

1.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

2.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3. ~ 8. (현행 제2 ~ 7호와 같음)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제8조 (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 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군산시 소속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산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

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산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산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

-----.

- 1. (현행과 같음)
- 2. ----- 후생복지시설

<신 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 (생략)
-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 2016 - 13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15.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미장지구 A3블럭 제일풍경채아파트
2. 사업주체
 - 가. 토지 소유자
 - 1) 명 칭 : (주)영우홀딩스
 - 2) 대표자 : 유 미 정
 -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2, 에스케이허브블루 1507호
 - 나. 등록사업자(공동사업주체)
 - 1) 명 칭 : 제일건설(주)
 - 2) 대표자 : 유 재 훈
 - 3)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38-13, 3층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미장지구 A3블럭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 나. 대지면적 : 38,911.0000m²
 - 다. 건축면적 : 7,544.6093m²
 - 라. 연 면 적 : 130,648.6004m²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9동 20~25층, 871세대
 - 전용 79.1975m² 150세대
 - 전용 84.9038m² 571세대
 - 전용 84.3536m² 150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 업 비 : 204,618,672천원

아. 사업기간 : 2013. 12. ~ 2016. 03.

4. 사업계획변경 내용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건축면적	7,535.6133m ²	7,544.6093m ²	증 8.9960m ²
연 면 적	130.622.3894m ²	130,648.6004m ²	증 26.2110m ²

※ 관리동 승강기 설치에 따른 변경

5.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6년 1월 13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6 - 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25.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미장지구 A-4BL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 칭 : 성지건설(주), (주)아이비클럽

나) 대표이사 : 이관호, 전용식

다)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296번길 5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3길 2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미장지구 A-4블록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분양)

나. 대지면적 : 35,320.83m²

다. 건축면적 : 8,086.63m² (건폐율 : 22.89%)

라. 연 면 적 : 116,496.80m² (용적률 : 247.04%)

마. 건축규모 : 아파트 10개동 지상16~25층, 805세대

- 59형 : 전용 59.99m² 78세대
- 65A형 : 전용 65.89m² 44세대
- 65B형 : 전용 65.84m² 47세대
- 74A형 : 전용 74.94m² 186세대

- 74B형 : 전용 74.95m² 40세대
- 74C형 : 전용 74.90m² 44세대
- 74D형 : 전용 74.87m² 18세대
- 84형 : 전용 84.95m² 274세대
- 101형 : 전용 101.89m² 70세대
- 114형 : 전용 114.97m² 4세대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사. 사업비 : 189,528,353천원

아. 사업기간 : 2016년 3월 1일 ~ 2018년 6월 30일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승인일 : 2016. 1. 25.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3)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6 - 18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27.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오식도동 유승한내들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주)유승종합건설
 - 나. 대표자 : 민 광 옥
 -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7층
(논현동, 유승테라폴리스)
 3. 시 공 자 : 사업주체와 동일
 4.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05-4번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나. 대지면적 : 52,271.2900㎡
 - 다. 건축면적 : 7,992.0097㎡
 - 라. 연 면 적 : 145,688.4710㎡
-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20~29층 /아파트 14개동의 1,159세대
 바.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1,159				
60A형	민영주택	534	60.0000	24.6132	84.6132	
60B형	민영주택	179	60.0000	24.5409	84.5409	
60C형	민영주택	108	60.0000	24.9583	84.9583	
74형	민영주택	338	74.9646	24.9942	99.9588	

사.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 사업비 : 184,168,078,000원

자. 사업기간 : 2016년 3월 2일 ~ 2019년 2월 28일

5.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6. 사업계획승인일 : 2016. 1. 19.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6 - 2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 27.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 당북리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변경없음
 - 가. 명 칭 : 에스엠주택건설주식회사
 - 나. 대 표 자 : 장 길 현
 - 다.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1, 대산빌딩5층
3. 시 공 자 : 변경없음
 - 가. 명 칭 : 주식회사대광건설
 - 나. 대 표 자 : 조 태 석
 - 다.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
4. 사업내용 : 변경없음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61-1외 91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나. 대지면적 : 21,069.00m²
 - 다. 건축면적 : 4,014.5817m²
 - 라. 연 면 적 : 67,272.6949m²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5동 29층, 469세대
 - 바.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84A형	민영주택	380	84.9959	24.7825	109.7784	
84B형	민영주택	46	84.9949	26.3697	111.3646	
84C형	민영주택	43	84.9768	26.5761	111.5529	

사.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 사업비 : 107,706,240천원

자. 사업기간 : 2015년 05월 01일 ~ 2017년 11월 30일

5. 주요 변경사항

가. 파일 위치 보강 및 기초판 보강 변경

나. 지하주차장 스라브 철근 배근 변경

다. 실외기실 그릴창 위치 변경 및 빗물저수조 점검구 위치변경 등

6. 설계도서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6년 1월 27일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6 - 112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

군 산 시 장

-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6. 2. 1.
-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6. 2. 1.
-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1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새긴날	재료	등록사유
신 조	군산시나운2동장 인 민원사무전용	훈민정음체 2.1*2.1		2016. 2. 1.	NBR 특수고무	인증기고장에 따른 구입설치

-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1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폐기일	재료	폐기사유
폐 기	군산시나운2동장 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2016. 2. 1.	신주	인증기 고장

군산시 공고 제2016-11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3호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무단폐업(시설물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에 불응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2016년 1월 20일 ~ 2016년 2월 3일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을 무단폐업(시설물전부 철거 등)
3.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2016.2.4)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
5. 업소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지번)	위반내용	행정처분	행정처분일
휴게	9-525	열매다방	이점*	군산시 경장동 502-1	무단폐업 (시설물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16.2.4

6. 기 타 :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처 :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063)454-3425) 끝.

2016. 1.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6 - 169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군 산 시 장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6. 2. 1 ~ 5. 15(105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군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 : 063-454-2960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통해 지정한 날짜에 소각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지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2016 - 2호

군산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안) 행정 예고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군산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전에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일

군 산 시 장

1. 지정취지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는 버스정류소를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의 불편 함을 덜어드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6. 2. 1 ~ 2016. 2. 23(23일간)

3. 행정예고 방법 :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대 등

4.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안)

○ 읍·면·동별 지정고시 대상 버스정류소 현황 : 898개소

▶ 금연구역 지정고시 버스정류소 위치 등 : 별도 붙임

▶ 금연구역 : 버스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보도

연 번	구 분	합 계	유개정류소			무개정류소
			소계	유 형		
				벽 돌	철 재	
합 계		898	581	69	512	317
1	옥구읍	66	58	9	49	8
2	옥산면	38	30	-	30	8
3	회현면	43	40	6	34	3
4	임피면	41	31	10	21	10
5	서수면	40	36	16	20	4
6	대야면	62	47	11	36	15
7	개정면	24	20	-	20	4
8	성산면	45	37	7	30	8
9	나포면	47	41	10	31	6
10	옥도면	1	1	-	1	-
11	옥서면	35	32	-	32	3
12	해신동	10	9	-	9	1
13	월명동	19	6	-	6	13
14	삼학동	7	3	-	3	4
15	신평동	15	2	-	2	13
16	중앙동	8	3	-	3	5
17	흥남동	26	6	-	6	20
18	조촌동	43	18	-	18	25
19	경암동	11	6	-	6	5
20	구암동	16	11	-	11	5
21	개정동	21	17	-	17	4
22	수송동	62	23	-	23	39
23	나운1동	11	6	-	6	5
24	나운2동	19	13	-	13	6
25	나운3동	54	22	-	22	32
26	소룡동	84	32	-	32	52
27	미성동	50	31	-	31	19

※ 향후 버스정류소 신설·변경(소멸)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취소

나.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16. 3. 1.

다. 계도기간 : 2016. 3. 1 ~ 6. 30(지정 후 시행 전까지)일까지

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6년 7월 1일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보건소 건강관리과장)에게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 (1) 우편 : (우573-35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생활계
- (2) 전화 : 063-460-3263/ 팩스 063-468-4763

다) 2016. 2. 23일내 의견서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붙임 :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지정대상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금연구역 지정(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6년 2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예규 제30호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예규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받은”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본 예규는 2016. 2. 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 고)</p> <p>① ~ ② (생 략)</p> <p><u><신 설></u></p>	<p>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 고)</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 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 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p> <p>-----</p> <p>----- 받은 -----</p> <p>-----</p> <p>-----.</p>	<p>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p> <p>-----</p> <p>-----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 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p> <p>-----</p> <p>-----.</p>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관련)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단위:천원/1시간)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300(차관 급)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200(차관 급)	120	100	

-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6-0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0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산항 제1,3,6,7부두 임항창고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또는 명칭) : (주)와이즈솔라 대표 송기석
 - 2)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부원로 116-1101, 산북동 하늘가아파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1) 항만명 : 군산항
 - 2) 공사의 종류 : 발전설비 설치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1) 목 적 : 군산항 제1,3,6,7부두 임항창고 지붕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 2)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군산항 제1,3부두), 오식도동(군산항 제6부두), 비응도동(군산항 제7부두) 일원
 - 사업내용 : 태양광(3,240.74kwp), 발전시설(38,811.2㎡), 전기실 및 지중선로(1,313.6㎡)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